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76호

의 안 명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교

의 결 일 2021. 9. 6.

주 문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7개 국·공립대학교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9월 6일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2021. 9.

국민권익위원회

ACRC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요건 사각지대 해소 ····· 5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 8

3.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11

4. 전기·수소차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 14

5. 지자체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확대 방안 마련 ·· 16

Ⅳ. 조치사항 및 기한 ····· 18

붙임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 현황

3.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I. 추진배경

< 대통령 말씀 >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마련 ('20.12.1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음 ('21.5.29.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 한국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오는 11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며,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20만 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 ('21.5.30. 2021 P4G 서울정상회의)

□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모색**

※ 온실가스의 13.5%, 초미세먼지의 13.8%가 수송부문에서 배출(환경부)
수송부문 중 도로의 탄소 배출은 '17년 96%로 절대적(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및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분석**

○ 민원분석 결과, 충전시설 불편사항, 구매지원 확대, 정책건의·문의, 차량운행 지원, 차량성능 관련 순으로 주로 민원 발생, 이에 대해 주요개선 필요사항* 도출

*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 △ 친환경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강화, △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자 관리 강화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 (관계기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기관별 소관 과제 개선 추진
* (권익위) 지자체별 보조금 신청요건 일원화 등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전기·수소차 확산 정책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고충·불편 유발**

※ 전기·수소차 보급 : ('17)14,689대 → ('18)34,956대 → ('19)51,160대 → ('20)66,749대

○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고시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그 **기준일이 상이,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발생**

※ 지자체마다 거주요건 기준일을 사업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로 달리 정함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한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만 통행료 감면, 일반(TCS)차로 감면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은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차로 및 일반차로 **모두 통행료 감면**

○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에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정기권 이용자 등 **일부만 감면하여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국·공립대학(26개) 중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11개) 일부 감면하는 대학(6개)은 17개로 65.4% 차지('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전기·수소차 **증빙자료를 미소지하거나 분실시 감면혜택 불가**

※ 180여개 지자체 중 130여개 지자체는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육안으로 전기·수소차 여부 확인('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료도로**도 전기·수소차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 수송부문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 감면**

※ 32개 지자체 유료도로 중 25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미감면, 6개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 등록차량만 일부 감면

□ 전기·수소차 구매·운행시 이용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분석(~4월), 실태조사(5~6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7월), 기관협의(7~8월)

Ⅱ. 일반현황

□ 전기 · 수소차 정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자동차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전기 · 수소차 보급 현황

○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 정책으로 매년 전기·수소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보급현황) '20.12월 기준 전기차 168,857대, 수소차 10,945대 보급

(단위 : 대)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합계		12,248	14,689	34,956	51,160	66,749	**179,802**
	전기차	12,154	14,606	34,225	46,966	60,906	**168,857**
	수소차	94	83	731	4,194	5,843	**10,945**

□ 전기 · 수소차 구매 · 운행시 지원정책

○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 **국가와 지자체**는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며, 지원대상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예) 승용차 기준, 국비는 전기차 최대 800만원, 수소차 2,250만원, 지방비는 국비에 비례 지원

-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금액 현황('21년도)

(단위 : 만원, 승용차 기준)

구분	전기차		수소차		구분	전기차		수소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800	400	2,250	1,100	경기	800	400~600	2,250	1,000
부산	800	450	2,250	1,200	강원	800	520	2,250	1,500
대구	800	450	2,250	900	충북	800	800	2,250	1,000
인천	800	420	2,250	1,000	충남	800	700~1,000	2,250	1,000
광주	800	500	2,250	1,000	전북	800	900	2,250	1,400
대전	800	700	2,250	1,000	전남	800	720~960	2,250	1,200~1,500
울산	800	550	2,250	1,150	경북	800	600~1,100	2,250	1,000
세종	800	300	2,250	1,000	경남	800	600~800	2,250	1,060
					제주	800	400	-	-

(출처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 유료도로 중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의 50% 감면**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한시적('17.9월~'20.12월)으로 도입되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12월까지 연장

- 전국 유료도로 현황('20.12월)

구분	추진방식	노선·구간	주무관청	유료도로관리기관	연장(km)
계		82개			5,043.3
고속도로	재정	31개 노선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4,036.6
	민자	19개 노선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법인	804.8
지자체 유료도로	재정	1개 구간	관할 지자체	지자체	7.3
	민자	31개 구간	관할 지자체	민자도로 법인	194.5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 지자체에서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주차시 **주차요금의 50% 이상 감면** (근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 주차장 종류 (주차장법 제2조)

- 노상(路上) 주차장 : 도로의 노면의 일정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 노외(路外) 주차장 : 도로의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 부설 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요건 사각지대 해소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차종, 지원금액,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 신청을 받아 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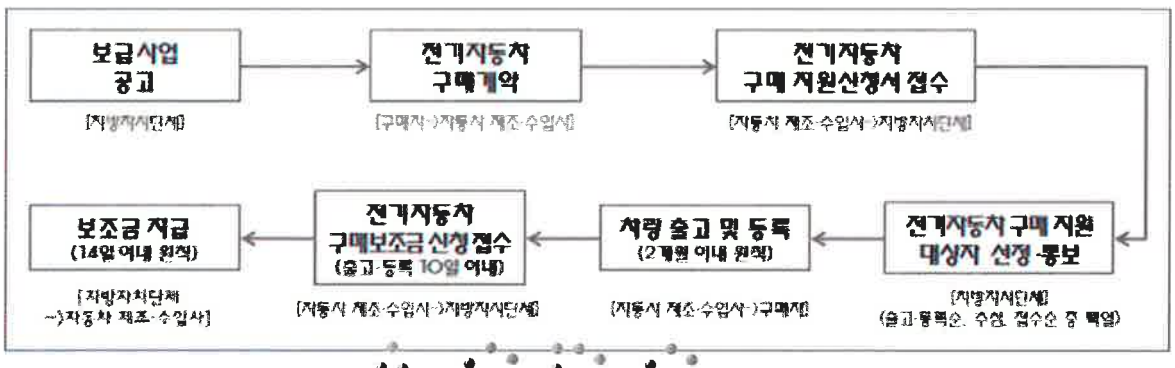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췌>(환경부, '21.1월)

> 4-1-1. 보급사업 공고
>
>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
>
>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 개인 구매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보급사업 공고시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을 자격요건에 명시**

*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현재 ○개월 전부터 자동차등록시까지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문제점

○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고시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 기준일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발생**

<지자체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예시>(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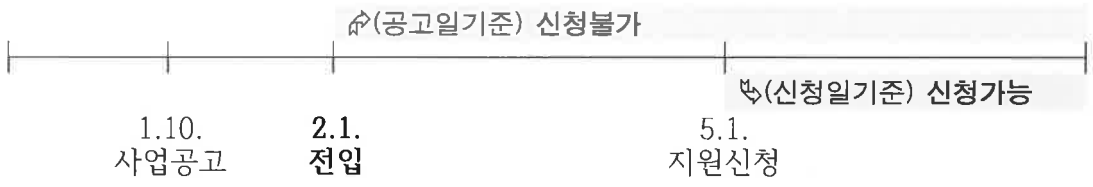
■ ○○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21.1.22.)
- 신청자격 : 보급사업 **공고일 현재**
  ①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② ○○시에 주소를 둔 기업, 법인·단체, 공공기관

■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21.4.2.)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주소를 △△시에 두어야 함
  ① (개인)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② (법인) △△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발생 예시>

■ (예) 1.10. 보급사업 공고, 2.1. 전입, 5.1. 구매 지원신청

⇒ 3개월 거주를 신청요건으로 공고한 경우, 공고일 기준시 지원신청 불가, 지원신청일 기준시 5.1.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지자체마다 거주요건에 대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달라 지원자격에서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 및 의무 거주 규정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공고일 전날까지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1개월,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21.5. ○○일보)

▪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거주기간 요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연초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A시에서 B시로 이사하는데, B시는 공고일 전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 불가함. 보조금 신청 전 거주요건은 전기차 친환경적 기여도와 상관없는 조건임 ('20.1. 국민신문고 민원, ○○부)

○ 한편, 같은 차종의 전기·수소차에 대해 국비 보조금은 동일하나, 지역별 지방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른 구매자의 형평성 문제 및 위장전입 발생 우려

-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민원 제기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타 지역과 비교시 우리시의 보조금 지급액수가 ○○시보다 300만원이나 적고 다른 시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19.11. 국민신문고 민원, ○○시)

※ A차종, △△시 1,200만원(국비800+지방비400), □□시 1,500만원(국비800+지방비700)

□ 개선방안

○ 전기·수소차 보조금 신청자격의 **거주요건 기준일을 통일**하여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보급사업 공고) 개정 (환경부)**

< (예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체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체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설정

○ 전기·수소차 차종별 지방비 보조금 통일 방안 중장기* 검토 추진

* 지방자치의 취지 및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 현황

○ 「유료도로법」 상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등 차량 종류별로 통행료 징수

※ 통행료 수납 시스템

- **TCS(Toll Collection System)** :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 종류,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전자장비로 감지하여 통행요금을 자동계산하는 요금수납시스템(**유인수납**)
- **하이패스(Hi-pass)** :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달리는 차안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 수납시스템(ETCS)

○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에서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카드 장착)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의 50% 감면**(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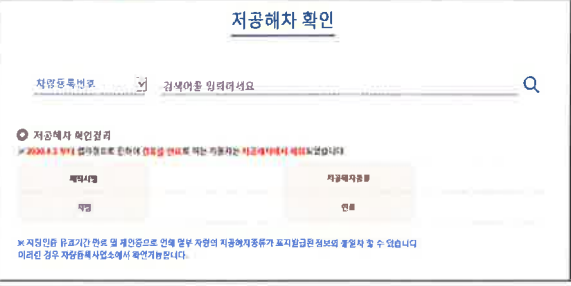
○ 고속도로 감면 대상 중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TCS차로 및 하이패스차로 모두 통행료 감면

※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방법

- TCS차로 : (경차) 고속도로 진입시 발행된 6종 통행권 제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주민센터 발급) 제시
- 하이패스차로 : (경차) 하이패스단말기 및 카드 장착
  (국가유공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에 지문 인증 및 통합복지카드 삽입 이용

○ 관계기관 전기·수소차 인증방법(자동차번호판, 표지, 홈페이지)

전기·수소차 인증	이미지	관계법령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파란색 바탕)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자동차제작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자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수소전기차

□ 문제점

○ 전기·수소차 중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하고 착오로 고속도로 **TCS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불가**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취지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산하여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의 경우 **TCS차로에서 통행료 감면이 허용**되는 것에 반해 전기·수소차만 TCS차로 감면 제외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전기·수소차는 정차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일반차로에도 통행료 감면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하이패스 이용시에만 50% 할인 혜택을 받고, **일반 톨게이트에서 받을 수 없음**.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시 지·정차 및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킨다는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시에만 할인받도록 한다고 하나 **전기·수소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차량은 **정차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일반 톨게이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함** ('20.10.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감면은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해서가 아니라 전기·수소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므로 일반차로 통과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민원 제기

> ▪ **전기차**는 하이패스 통과 시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있음. 그런데 실수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로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할인이 안됨**. 하이패스 이용 권장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혜택이라고 하면 **일반과 하이패스차로의 적용범위가 다른 것이 이해되지 않음** ('19.7. 국민신문고 민원, ○○공사)

□ 개선방안

○ **전기·수소차**는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과 같이 하이패스차로 뿐만 아니라 **TCS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개선**

※ 전기·수소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파란색), 저공해자동차 표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검색 등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시스템 개발 등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식별 용이**

⇨ 「유료도로법 시행령」(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개정 (국토부)

< (예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등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차량**

3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현황

○ 「주차장법」 상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주차시 주차요금의 50% 이상 감면

○ 공영주차장 외에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 부설 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주차시 주차요금 50% 감면

*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국립과학관, 국립수목원, 궁·능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2. 경차(1,000cc이하),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차량**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할을 감면**한다.

1. 경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주차요금 감면) 궁능관리소장은 [별표]의 감면율 한도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주차요금 감면대상(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한도	비 고
장애인 탑승 차량	100분의 80	관련 사실 증빙 자료 필요
국가유공자 탑승 차량	100분의 80	관련 사실 증빙 자료 필요
경형 차량	100분의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	**100분의 5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 문제점

○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은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미운영**

○ '21.6월 전국 5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대학**(26개) 중 11개 대학은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미감면,** 6개 대학은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

* 일부 감면 : 전기·수소차 이용자 중 정기권이용자, 일반인 또는 감면 요청자 등 특정 이용자에 한하여 감면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 현황>('21.6월)

구분	대학명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9)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일부 감면(6)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미감면(11)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전부 개방(28)	강릉원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안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 54개 국·공립대학 실태조사 자료)

○ 국립대학교 주차장에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미감면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민원 제기

▪ 수소차로 ○○대학교를 이용하면서 학내 정기주차권을 등록하는데, 수소차는 친환경차량임에도 주차료 감면이 안 됨. **국립교육기관에서** 아직까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으니, 관련 규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음 ('20.4. 국민신문고 민원, ○○대학교)

□ 개선방안

○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 대상만 감면하는 경우 전면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안내문 등 정비

⇨ 주차요금 관련 교통관리규정, 주차안내 등에 반영 (17개 국·공립대학)

개선(안) 예시

o **[교통관리규정]**

제0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할인한다.

1.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2. **전기차, 수소전기차**

o **(주차안내) 주차요금 할인대상 차량**

대상자	할인내용	비고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기차, 수소전기차**		**저공해차 표지 등 부착**

4 전기·수소차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 현황

○ 지자체는 전기·수소차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전기·수소차 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지자체 주차관리 시스템과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즉시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수소차 확인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제도>

- (개요) 전기·수소차 표지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주차요금 즉시 감면**
- (효과)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즉시 적용하여 할인 절차 및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 (연계 절차) 입차시 차량번호 인식 ⇒ 지자체 주차관리시스템과 행안부 시스템 연계 ⇒ 행안부 시스템과 정보보유기관(한국환경공단) 연계 ⇒ 정보보유기관에서 행안부 시스템에 차량정보(전기·수소차) 전송 ⇒ 행안부 시스템에서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 전송 ⇒ 출차시 자동 감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연계도



○ 지자체에서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스템 개발 비용은 **행안부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거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

□ 문제점

○ 전기·수소차 즉시감면서비스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저공해차 표지 등 **증빙자료를 소지하지 않거나 분실시 감면혜택 불가**

○ '21.6월 1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즉시감면서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30여개 지자체는 즉시감면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출차시 **전기자동차 번호판(파란색), 저공해차 표지 등 전기·수소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전기·수소차 즉시감면서비스를 적용한 32개*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 비용은 1천만원~1억5천만원 가량으로 주차장 수, 프로그램 개발 범위 등 시스템 개발 환경에 따라 상이

* 경기 부천시(78개소), 서울 관악구(36개소), 전남 순천시(25개소), 서울 성동구(18개소) 등

○ 번호판 자동인식 불가로 전기·수소차임을 매번 알려야 하는 불편 민원 제기

>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수소전기차 50% 할인 혜택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해결되고 있음. 그런데 ○○시는 아직도 **주차요금소 앞에 멈춰서 담당자에게 1종 할인차량이라고 얘기해야 해서 불편**함.
>
> ('20.7. 국민신문고 민원, ○○시)

□ 개선방안

○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차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도입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즉시감면서비스 미도입 유료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자체에 한함)

5 지자체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확대 방안 마련

□ 현황

○ 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전국 32개 지자체 유료도로 중 7개(4개 지역) 유료도로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붙임3 참조)

※ 광안대로 등 6개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 등록차량만 감면, 비봉~매송 고속화도로는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감면

<지자체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현황>('20.12월)

No	지역	구 간	개통일	연장(km)	일평균 교통량(대)	전기·수소차 관련	
						감면율	근거규정
1	부산	광안대로	'03.06	7.4	114,100	10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등록지 기준 표지발급, TCS한정)
2	대구	범안로	'02.09	7.3	43,505	100%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등록지 기준 표지발급, Hi가능)
3		앞산터널로	'13.06	10.4	47,951		
4	광주	광주시제2순환도로 (두암IC~소태IC)	'00.11	5.7	58,575	50%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등록지 기준 카드발급, TCS한정)
5		광주시제2순환도로 (효덕IC~풍암동)	'04.10	3.5	53,074		
6		광주시제2순환도로 (서창IC~신가지구)	'07.05	4.6	73,259		
7	경기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17.07	8.9	35,481	50%	유료도로법 제8조 (등록지 기준 아닌 번호판 기준, TCS한정)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

○ 광안대로(재정도로)를 제외한 31개 유료도로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권리관계 등을 명시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문제점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료도로도 전기·수소차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으나, **25개 유료도로는 미감면, 6개 도로는 해당 지자체 등록차량에 한해 일부 감면**

○ 출퇴근, 영리활동 등 목적으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를 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에도 **차량 등록지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미감면은 불합리**

○ (유사사례)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혼잡통행료 감면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부과시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면제

○ 지자체 유료도로 모두 동일하게 통행료 감면이 되거나 타 지역에 등록된 전기·수소차도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여 달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

> ▪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유료도로의 경우 동일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으며**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하는 것보다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음 ('20.9. ○○일보)

> ▪ △△시 ○○대교를 지나면서 **전기차는 통행료 감면이라고 얘기**했는데, 타 시도 전기차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함. 지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자주 다니는 △△에서 △△시 **등록차량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차량 등록지 아닌 차량을 제외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음 ('19.8. 국민신문고 민원, △△시설공단)

□ 개선방안

○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자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감면 추진**

⇨ **14**개 지방자체단체(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창원시)

Ⅳ. 조치사항 및 기한

□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F4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요건 사각지대 해소		
o 전기·수소차 보조금 신청자격의 거주요건 기준일을 통일하여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보급사업 공고) 개정	환경부	'22. 2월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o 고속도로 TCS차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개선 ⇨ 「유료도로법 시행령」(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개정	국토부	'22. 2월
3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o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 대상만 감면하는 경우 전면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안내문 등 정비 ⇨ 주차요금 관련 교통관리규정, 주차안내 등에 반영	17개 국·공립대학*	'22. 2월
4 전기·수소차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o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수소차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도입 추진	지자체	정책제안
5 지자체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확대 방안 마련		
o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자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감면 추진	지자체	정책제안

* 17개 국·공립대학 :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입·임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1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자치단체보조 1,005,000백만원

※ 승용 525,000백만원, 승합 80,000백만원, 화물 400,000백만원

Ⅱ 사업 추진체계

1.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2. 사업 추진절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2.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함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4. 보조금 집행 절차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개인 구매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붙임 2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 현황 ※ '21.6월 실태조사 결과

연번	대학명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여부	감면내역	내부규정
1	강릉원주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2	강원대학교	X		
3	경북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경북대학교 교통관리규정
4	경상국립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경상국립대학교 질서유지운영 규정
5	공주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공주대학교 차량교통관리운영 시행세칙
6	광주과학기술원	주차요금 무료		
7	군산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8	금오공과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금오공과대학교 교통관리규정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차요금 무료		
10	목포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11	목포해양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12	부경대학교	X		부경대학교 교통관리 규정
13	부산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교통관리 규정
15	서울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16	순천대학교	X		순천대학교 차량출입및주정차 운영지침
17	안동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18	인천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주차요금징수체계
19	전남대학교	X		전남대학교 교통관리 운영지침
20	전북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전북대학교 출입차량관리규정
21	제주대학교	X		
22	창원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청사관리 및 운영 업무편람
23	충남대학교	X		
24	충북대학교	X		충북대학교 교통관리운영세칙
25	한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연번	대학명	전기·수소차 주차 요금 감면여부	감면내역	내부규정
26	한국과학기술원	주차요금 무료		
27	한국교원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28	한국교통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30	한국체육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주차관리규정
31	한국해양대학교	X		주차관리운영지침
32	한밭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33	경인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34	공주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35	광주교육대학교	X		광주교육대학교 교통관리 지침
36	대구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37	부산교육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위탁업체와 상호 협의로 감면적용
38	서울교육대학교	X		차량출입 및 주정차 운영 규정
39	전주교육대학교	X		전주교육대학교 주차관리운영 지침
40	진주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41	청주교육대학교	△	주차요금의 50%	청주교육대학교 주차관리규정
42	춘천교육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43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차요금 무료		
44	한국농수산대학	주차요금 무료		
45	한국복지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46	서울시립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7	경남도립거창대학	주차요금 무료		
48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차요금 무료		
49	경북도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50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51	충북도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52	강원도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53	충남도립대학교	주차요금 무료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	주차요금의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전기·수소차 이용자 중 일부 대상자만 감면

붙임 3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20.12.31. 현재)

구 간		개통일	연장 (km)	징수기간	일평균 통행량(대)	비고
32개 구간			201.9			
서울 (3)	우면산터널	'04.01	3.0	'04.01 ~ '34.01	35,346	
	용마터널	'14.11	3.6	'14.11 ~ '44.11	31,001	
	강남순환로	'16.07	12.4	'16.07 ~ '46.07	117,316	
부산 (8)	광안대로	'03.06	7.4	'03.06 ~ '28.05	114,100	재정도로
	백양터널	'00.01	2.3	'00.01 ~ '25.01	77,700	
	수정산터널	'02.04	2.4	'02.04 ~ '27.04	49,300	
	을숙도대교	'10.02	5.2	'10.02 ~ '40.01	36,200	
	거가대교	'10.12	8.2	'11.01 ~ '50.12	23,000	
	부산항대교	'14.08	3.3	'14.08 ~ '44.08	47,400	
	산성터널	'18.10	5.6	'18.10~'49.09	31,800	
	천마터널	'19.04	3.3	'19.04~'49.03	27,500	
대구 (2)	범안로	'02.09	7.3	'02.09 ~ '26.08	43,505	
	앞산터널로	'13.06	10.4	'13.06 ~ '39.06	47,951	
인천 (3)	문학터널	'02.04	1.5	'02.04 ~ '22.03	37,379	
	원적산터널	'04.07	2.3	'04.07 ~ '34.07	10,494	
	만월산터널	'05.07	2.9	'05.07 ~ '35.07	21,887	
광주 (3)	광주시제2순환도로 두암IC-소태IC	'00.11	5.7	'01.01 ~ '28.12	58,575	
	광주시제2순환도로 효덕IC-풍암동	'04.10	3.5	'04.12 ~ '34.11	53,074	
	광주시제2순환도로 서창IC-신가지구	'07.05	4.6	'07.07 ~ '33.09	73,259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04.09	4.9	'04.09 ~ '31.12	60,453	
울산	울산대교	'15.06	8.4	'15.06 ~ '45.06	47,298	
경기 (7)	일산대교	'08.05	1.8	'08.05 ~ '38.05	72,950	
	제3경인 고속화도로	'10.08	14.3	'10.08 ~ '40.07	209,469	
	수석-호평 고속화도로	'11.09	11.2	'11.09~'41.08	30,413	남양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3.02	13.1	'13.02~'42.01	148,495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17.04	4.9	'17.04~'47.04	10,362	남양주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17.07	8.9	'17.07~'47.07	35,481	화성
	수원북부순환로	'20.09	7.7	'20.09~'50.09	27,223	수원
강원	미시령터널	'06.07	3.7	'06.07~'36.07	5,802	
경남 (3)	마창대교	'08.07	1.7	'08.07 ~ '38.07	39,646	
	창원-부산간 도로	'15.12	22.5	'13.11 ~ '45.12	49,659	
	팔룡터널	'18.11	4.0	'18.11 ~ '47.10	10,474	창원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

참고	전기·수소차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③ 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통행료의 100분의 50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정본입니다.

2021. 9. 8.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CRC